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온양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1공구)
-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 송악면 송학리 일원
- 다.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3.4km, 교량 2개소 등
-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2,197,220,000	9,682,200,000	8,802,000,000	880,200,000	2,515,020,000	129,680,000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총공사비 변경 가능(추후 설계변경 예정)

- 마. 기초금액 : 금9,682,200,000원(금구십육억팔천이백이십만원)
-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515일)
-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하천개발과)
-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 ※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 허용
- 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금8,802,000,000원(100%)
 - 전문공사업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736,300,000원(31.1%)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6,065,700,000원(68.9%)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총액계약,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에 해당합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8. 18.(화) 16:00	2026. 8. 24.(월) 10:00	2026. 8. 24.(월) 11:00 이후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자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하천2팀(☎041-635-7580)
- 나. 공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천한 예비가격추천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토목공사업(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3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68.9%)
추정가격	8,802,000,000	2,736,300,000	6,065,700,000

-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종합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공사업종 등록자가 적격심사를 받는 경우, 하도급 제한 원칙에 따라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4.20	3.39	4.93	7.89	E등급(1.00)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같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건설본부 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8,072,665,204원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미확정공종(P.S, 잠정금액)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금액(단가)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잠정단가(PS) 관련 내용

(단위: 원)

항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안전관리비	P.S	1	330,000,000	330,000,000
품질관리비	P.S	1	162,570,000	162,570,000
기타(제경비제외공종)	P.S	1	222,300,000	222,300,000
계				714,870,000

자.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구분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비 고
송학1교 (1공구)	특허 제10-1546827호	- 우각부 강결성능이 개선된 강재거더 및 이를 이용한 라멘 또는 박스형 구조물 시공방법	(주)효명이씨에스	
온양1교 (1공구)	추후 결정	추후 결정	추후 결정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31,491,769	131,394,594	99,444,961	63,622,645	13,067,067	131,392,502	330,000,000	162,570,000

9.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제외)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납도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2.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6. 8. 11.)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별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041-635-7536)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천개발과(☎041-635-758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2026. 8.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